

부산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516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5167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합52760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종우

피고, 항소인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김백영

변론 종결 2021. 3. 11.

판결 선고 2021. 4. 1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합5276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와 F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 500,000주에 관하여 2013. 11. 18.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F에게 위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나. 피고 D와 F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 600,000주에 관하여 2014. 10. 28.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F에게 위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다. 피고 E와 F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 600,000주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주식양도계약 및 별지 기재 주식 500,000주에 관하여 2016. 12. 28.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E는 F에게 위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 세무서에 신고 및 공시된 시점에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의 존재 및 F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사정을 들어 F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양도받은 각 주식을 F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는 F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각 양도하였다.
- ②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주식양도대금은 실제 이 사건 주식 가치보다 현저히 저렴할 뿐 아니라, F에게 지급된 주식양도대금은 외관상 피고들이 조달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F의 자금이므로,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F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③ 피고들은 각 F의 사위, 딸,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 ①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은 F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주식양도대금은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보다 더 높거나 부당하게 저렴하지 않게 정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F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하였다.
- ② 실제로 F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주식양도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4.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D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1, 2, 4, 20, 21, 24,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① F으로부터 피고 C는 2013. 11. 18. 제1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1주당 300원(= 150,000,000원 ÷ 500,000주)에 이 사건 주식 중 500,000주를, 피고 D은 2014. 10. 28. 제2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1주당 250원(= 150,000,000원 ÷ 600,000주)에 이 사건 주식 중 600,000주를 각 양수하였다.
- ②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는 2013. 12. 31. 기준 53원이고, 이연법인세로 세무조정을 한 경우 2014. 12. 31. 기준 697원, 2015. 12. 31. 기준 743원이다(제1심 감정인 I의 감정서 제7면 참조). 한편, 이연법인세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2014년 및 2015년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이하 '주임종 단기차입금'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는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 각 0원으로 평가된다(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2, 3면 참조).
- ③ 이 사건 회사의 세무조정 및 신고업무를 담당한 세무사 Q는 착오로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상 부채계정의 각 주임종 단기차입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 부채계정에 잘못 입력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9. 6.경 F과 위와 같은 업무상 잘못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9. 7. 3. 합의금 7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Q는 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2014년과 2015년 이 사건 회사의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입력 및 변환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이 이연법인세 계정으로 잘못 변환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이 법원 증인 Q의 녹취서 6, 7면 참조)

④ 공인회계사 R은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 부채는 각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을 제24호증)를 작성하였다.

⑤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재무상태표와 대차대조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유동부채 4,098,523,657주임종단기차입금 2,075,747,541	유동부채 4,098,523,657이연법인세부채 0(코드 72)기타 3,989,100,750(코드 14)	갑 제12호증의 1을 제4호증의 1
2013	유동부채 4,130,158,978주임종단기차입금 2,043,599,541	유동부채 4,130,158,978단기차입금 3,608,599,541(코드 03)이연법인세부채 0(코드 72)기타 453,475,381(코드 14)	갑 제12호증의 2을 제4호증의 2, 제21호증의 5
2014	유동부채 4,180,899,673주임종단기차입금 2,691,969,371	유동부채 4,180,899,673주임종단기차입금 0(코드 236)이연법인세부채 2,691,969,371(코드 278)기타 1,281,824,200(코드 279)	갑 제12호증의 3을 제4호증의 3, 제21호증의 3, 4, 5
2015	유동부채 4,171,124,939주임종단기차입금 2,966,541,031	유동부채 4,171,124,939주임종단기차입금 0이연법인세부채 2,966,541,031(코드 278)기타 1,075,000,000(코드 279)	갑 제12호증의 4을 제4호증의 4, 제21호증의 7, 8, 9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호증, 을 제50, 5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Q의 증언,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 I에 대한, 이 법원의 김천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2014년 및 2015년 당시의 실제 가치는 0원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및 2013년 각 대차대조표에 이연법인세 항목(코드 72)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었고, 2012년의 경우 유동부채 중 '기타' 항목(코드 14)에 3,989,100,750원이, 2013년의 경우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 항목(코드 03)에 3,608,599,541원이 각 기재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대차대조표에는 유동부채 중 '이연법인세부채' 항목(코드번호 278)에 2,691,969,371원이, 2015년 대차대조표에는 '이연법인세부채' 항목(코드번호 278)에

2,966,541,031원이 각 기재되었는데, 이는 각 재무상태표의 주임종 단기차입금과 그 금액이 동일하다. 여기에 ① 이 사건 회사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2013년까지 주임종 단기차입금을 유동부채 중 '기타' 또는 '단기차입금' 항목에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이연법인세 항목에 기재하지는 않았던 점, ② 2014년과 2015년 회계처리 당시 이연법인세 항목의 코드번호가 종전의 72에서 278로 바뀐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4년과 2015년의 이 사건 회사 대차대조표는 회계처리상 업무잘못으로 주임종 단기차입금이 이연법인세 항목으로 잘못 반영되었을 여지가 커 보인다.

② 세무사 Q는 이 사건 회사의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업무에 있어서의 잘못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주임종 단기차입금이 이연법인세 항목으로 처리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① 각 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코드 번호가 2013년 이전의 코드 번호와 달라진 점, ② Q가 F와 업무상 잘못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회계장부의 수치를 입력하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Q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③ 이연법인세 제도는 회계처리가 복잡하므로 통상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비등록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이 사건 회사가 굳이 2014년과 2015년에 이연법인세 제도를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제2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책임재산 감소 여부 이 사건 회사의 2014년경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치는 0원인데, 피고 D은 이 사건 주식 중 600,000주를 1주당 25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2 주식양도계약으로 F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1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8, 37,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F은 2013. 10.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부산 사하구 L 소재 M병원 1층의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61,000,000원을 2013. 11. 20.까지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F은 제1 주식양도계약 체결일인 2013. 11. 18. K의 국민은행 계좌에 361,000,000원을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고, K로부터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다.

③ 피고 C는 2013. 11. 18.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와 F 사이에 체결된 제1 주식양도계약은 F의 채무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F이 그 주식양도대금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주식 1주의 2013년경 가치는 53원인데, 피고 C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부당한 염가로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 C가 F에게 제1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날 F이 K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고, 달리 위 주식양도대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이처럼 피고 C가 제1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1주당 가치가 53원에 불과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00원에 양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식양도대금은 F의 K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1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C, D의 주식매수자금 출처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의 주식매수자금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F의 책임재산이 감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7, 18, 27, 2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은 S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차용하여 제1, 2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F과 피고 C, D 사이에 체결된 제1, 2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3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F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41123호 및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48695호로 각 확정된 대여금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F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F의 채무초과 상태 제3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F에게 이 사건 주식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은 그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살펴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F은 제3 주식양도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책임재산의 감소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E에게 이 사건 주식 2,450,000주 중 600,000주를 2016. 5. 17.에, 500,000주를 2016. 12. 28.에 각 양도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2016. 12. 31. 기준 1주당 주식가치는 964원이므로(감정인 I의 감정서 참조), F이 피고 E에게 제3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1주당 200원($= 220,000,000\text{원} \div 1,100,000\text{원}$)에 이 사건 주식 중 1,100,000주를 각 양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 책임재산의 부족을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변제자력 확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13,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F은 2013. 4. 19. 신용보증기금과 총 채무액 744,572,622원 중 2억 7,800만 원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25.경까지 그 중 7,300만 원 상당을 분할상환하였다.

② F은 2018. 6. 27. 기술보증기금과 총 채무액 2,922,063,639원 중 1억 5,000만 원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2021. 6. 27.경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6, 14, 15, 16,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3 주식양도계약의 목적이 F의 채무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실제 F이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들 제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3 주식양도계약 체결 무렵 F의 일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등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이 급박하게 필요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피고 E의 주식양도대금 지급시기와 F의 각종 채무의 변제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6, 14, 15, 16,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피고 E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실제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제3 주식양도계약이 채무변제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E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E는 채무자 F의 배우자로서 제3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F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E는 2016. 5.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 E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F과 제3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 E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처럼 F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제3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F이 제3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E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E는 F에게 이 사건 주식 110,000주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F과 피고 E 사이의 제3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E는 F에게 이 사건 주식 110,000주의 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 D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E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재형

판사이재욱

판사박선영

별지